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김경영 의원 외 15명
- 나. 의안번호 : 제666호
- 다. 발의일자 : 2019. 5. 24
- 라. 회부일자 : 2019. 5. 30

2. 제 안 사 유

- 2019년 하반기부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2017.3.15)한 지역(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상시 제한할 예정인 바,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시행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시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 요 내 용

- 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호에 따른 운행제한을 적용
하지 아니함(안 제5조제4항 신설)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2019년 하반기부터 '녹색교통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상시 제한할 예정인 바,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기 시행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법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19.2.15)하고 있으며, 제18조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녹색교통지역¹⁾으로 지정된 지역(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²⁾')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상시 제한³⁾하는 것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임.

1) 지정(국토부 고시 제2017-144호, '17.3.15), 특별종합대책(국토부 고시 제2018-483호, '18.8.6)

2) 한양도성 내부(16.7km²), 종로구(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8개동, 중구(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7개동

3) 7월부터 시범운영, 12월부터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비교〉

구 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 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 상시
지 역	◦ 서울시 전 지역	◦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대 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전국)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전국)
부과횟수	◦ 1일 1회 부과	◦ 1일 1회 부과
과태료	◦ 10만원	◦ 25만원(미확정)

-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녹색교통지역) 내 자동차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에 있어 입법간 충돌의 소지가 있음.

또한, 기 시행중인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외에 추가적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경우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경우 2중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기 시행중이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입법간 충돌의 소지를 없애고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2중 부과 소지를 없애는 것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제도 시행에 앞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특별대책

지역을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4)’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5)’으로 구분하고 있고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녹색교통지역)을 지정, 공고하고 있으므로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에서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
- 4) 주로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 5) 주로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녹색교통물류를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관련법령]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이라 한다)을 정기조사·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을 정기조사·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삭제

② 특별대책지역은 지정요건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1.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녹색 교통물류를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을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상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을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